

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11. 20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11. 2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5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(99. 12. 14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)

가. 제안이유

- 공수의 제도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을 위촉하여 공중위생업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이며
- 그간 부천시에서는 1985. 9. 9 동조례 제정 이후 매년 개업 수의사 중 1명을 위촉하여 가축방역 및 예찰업무를 담당해 하였으나,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가축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의 감소로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94년부터는 공수의를 위촉치 않고 수의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필요시 개업 수의사를 동원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,
- 99년 2차 구조조정시 동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인력(수의 7급)을 확보함으로써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동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수의 공석에 대한 대책은? ○ 새로 지은 도축장에는 공수의가 필요치 않습니까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차 구조조정으로 수의 7급이 확보되어 공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○ 경기도 축산연구소에서 파견나와 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249호
의결년월일	1999. 12. 24 (제75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공수의 제도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을 위촉하여 공중위생업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이며
- 그간 부천시에서는 1985. 9. 9 동조례 제정 이후 매년 개업 수의사 중 1명을 위촉하여 가축방역 및 예찰업무를 담당케 하였으나,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가축사육농가 및 사육두수의 감소로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94년부터는 공수의를 위촉치 않고 수의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필요시 개업 수의사를 동원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,
- 99년 2차 구조조정시 동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인력(수의 7급)을 확보함으로써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공수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공수의조례 [1985. 9. 9
조례 제721호]

개정 1991. 3. 6 조례 제1110호

1997. 10. 20 조례 제154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공수의(이하 "공수의"라 한다)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시장은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공수의의 업무)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
2. 동물 질병의 연구 조사
3.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
4.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
5. 동물의 건강진단과 환경위생
6.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4조(위촉기간) 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)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여비)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) ①공수의는 월 10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②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 <1985. 9. 9 조례 제7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1. 3. 6 조례 제111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7. 10. 20 조례 제1549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